

신용평가 관련 법규

2015. 04.

I. 신용평가 관련 법규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
4. 금융투자업규정
5. 금융투자업시행세칙

II. 유가증권 신용평가 근거 규정

평가대상	근거 규정
1. 회사채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제11조의2제1항, 제14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 제7-17조
2. 기업어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3조, 제328조 금융투자업규정 제5-29조, 제7-17조, 제8-21조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7-3조
3. 전자단기사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9조, 제183조
4. 자산유동화증권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제11조의2제1항, 제14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2조제1항, 제5조제1항
5. 외국법인발행원화표시채권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제11조의2제1항, 제14조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2-11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4조

1. 회사채

근거 규정	내 용
<p>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금융투자협회)</p>	<p>제11조의2(무보증사채의 인수)</p> <p>① 금융투자회사가 무보증사채를 인수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신용평가회사"라 한다) 중에서 둘 이상(「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을 인수하는 경우 또는 신용평가회사의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외국법인등이 발행한 무보증사채의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11조제2항제1호마목의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무보증사채에 대한 평가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p> <p>제14조(원화표시채권의 인수)</p> <p>금융투자회사가 인수할 수 있는 원화표시채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이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무보증사채인 경우 둘 이상(신용평가회사의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평가를 받을 것 2. 법 제309조제5항에 따라 등록발행될 것 (해외판매채권의 경우는 제외한다)
<p>금융투자업규정 (금융위원회)</p>	<p>제4-6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p> <p>영 제87조제4항제9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4. 집합투자업자가 공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국내에서 발행된 무보증사채를 편입함에 있어 2이상(신용평가기관의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지 아니한 무보증사채를 편입하는 행위. 다만, 당해 무보증사채의 발행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이내에 신용평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7-17조(신용평가등급의 제한)</p> <p>①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채무증권(양도성 예금증서 및 금융기관이 발행·매출·</p>

	<p>중개한 어음 및 채무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이하 “상위 2개 등급”이라 한다. 이하 같다) 이 내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등급은 세분류하지 않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p>
--	--

2. 기업어음

근거 규정	내 용
<p>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83조 (기업어음증권 등의 장외거래)</p> <p>① 법 제166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기업어음증권을 매매하거나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기업어음증권 일 것 2. 기업어음증권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할 것 <p>② 기업어음증권의 매매 등의 방법, 신용평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p> <p>제328조 (무담보어음 등의 취급)</p> <p>② 종합금융회사가 무담보어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무담보어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것일 것. 다만, 직전 신용평가등급이 모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등급인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았을 것 2.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등급 중 최저의 신용평가등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등급 이상일 것.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어음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업이 발행한 어음인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p>③ 종합금융회사는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하는 신용평가등급 중 최저</p>

	<p>의 신용평가등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등급 이상인 무보증어음에 한하여 매매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업이 발행한 어음인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금융투자업규정 (금융위원회)</p>	<p>제5-29조(신용평가 방법)</p> <p>① 기업어음증권에 대한 신용등급은 어음발행인의 최근사업연도 수정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어야 한다.</p> <p>② 기업어음증권의 발행인이 최근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수정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복수신용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최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제1항에 불구하고 직전사업연도의 수정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복수신용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p> <p>제7-17조(신용평가등급의 제한)</p> <p>①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채무증권(양도성 예금증서 및 금융기관이 발행·매출·중개한 어음 및 채무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이하 "상위 2개 등급"이라 한다. 이하 같다) 이내 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등급은 세분류하지 않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p> <p>제8-21조(무담보어음의 매도)</p> <p>① 영 제32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등급"이란 A1 등급을 말한다.</p> <p>② 영 제328조제2항제2호 본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등급"이란 B 등급을 말한다. 다만, 영 제328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기업이 발행한 어음에 대하여는 신용평가 등급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 그 밖에 무담보어음의 신용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p>
<p>금융투자업규정시 행세칙 (금융감독원)</p>	<p>제7-3조(신용평가등급의 적용)</p> <p>① 영 제328조제2항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은 최근 사업연도의 결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어야 한다.</p> <p>② 제1항의 평가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 후 6개월간은 그 직전 사업연도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p>

	③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때에는 당해 신용평가업자가 허가 취소일 이후 또는 업무 정지 기간 등에 평가한 어음의 신용평가등급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

3. 전자단기사채

근거 규정	내 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119조(법 제3편제1장 적용제외 증권)</p> <p>② 법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p> <p>6.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등(이하 "전자단기사채등"이라 한다)으로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증권</p> <p>제183조 (기업어음증권 등의 장외거래)</p> <p>① 법 제166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기업어음 증권을 매매하거나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p> <p>1.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기업어음증권 일 것</p> <p>2. 기업어음증권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할 것</p> <p>② 기업어음증권의 매매 등의 방법, 신용평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p> <p>③ 전자단기사채등의 장외거래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p>

4. 자산유동화증권

근거 규정	내 용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금융투자협회)	<p>제11조의2(무보증사채의 인수)</p> <p>① 금융투자회사가 무보증사채를 인수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신용평가회사"라 한다) 중에서 둘 이상(「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p>

	<p>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을 인수하는 경우 또는 신용평가회사의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외국법인등이 발행한 무보증사채의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11조제2항제1호마목의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무보증사채에 대한 평가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p> <p>제14조(원화표시채권의 인수) 금융투자회사가 인수할 수 있는 원화표시채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이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무보증사채인 경우 둘 이상(신용평가회사의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평가를 받을 것 법 제309조제5항에 따라 등록발행될 것 (해외판매채권의 경우는 제외한다)
<p>금융투자업규정 (금융위원회)</p>	<p>제4-6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영 제87조제4항제9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집합투자업자가 공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국내에서 발행된 무보증사채를 편입함에 있어 2이상(신용평가기관의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지 아니한 무보증사채를 편입하는 행위. 다만, 당해 무보증사채의 발행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이내에 신용평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자산유동화업무 감독규정 (금감원)</p>	<p>제2조(자산보유자 인정기준)</p> <p>① 법 제2조제2호 너목에서 “신용도가 우량한 법인으로서 금융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자산유동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다만, 외국법인이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설립한 국내법인(국내 자회사를 말한다)은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동화계획의 등록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용평가업

	<p>자부터 투자적격의 평가등급(당해 법인에 대한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무보증사채에 대한 평가등급을 말한다)을 받은 법인</p> <p>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한국거래소가 지정한 관리종목인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외국법인은 그 본국에서 이에 상응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p> <p>제5조(계획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p> <p>① 계획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여야 한다.</p> <p>4. 외부평가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4항에서 정하는 외부평가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가의견서</p>
--	---

5. 외국법인발행 원화표시채권

근거 규정	내 용
<p>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금융투자협회)</p>	<p>제11조의2(무보증사채의 인수)</p> <p>① 금융투자회사가 무보증사채를 인수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신용평가회사"라 한다) 중에서 둘 이상(「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을 인수하는 경우 또는 신용평가회사의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외국법인등이 발행한 무보증사채의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11조제2항제1호마목의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무보증사채에 대한 평가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p> <p>제14조(원화표시채권의 인수)</p> <p>금융투자회사가 인수할 수 있는 원화표시채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이어야 한다.</p> <p>1. 무보증사채인 경우 둘 이상(신용평가회사의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p>

	<p>평가를 받을 것</p> <p>2. 법 제309조제5항에 따라 등록발행될 것 (해외판매채권의 경우는 제외한다)</p>
<p>증권의발행및공시 등에관한규정 (금융위원회)</p>	<p>제2-11조(외국법인등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p> <p>① 발행인이 외국법인등인 경우에는 영 제129조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p>~중략~</p> <p>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1. 발행인이 외국 기업인 경우(집합투자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p> <p>가. ~ 라. 생략</p> <p>마. 해당 증권에 대하여 신용평가업자(감독원장이 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평가등급을 받은 경우 그 신용평가서 사본</p> <p>바. ~ 파. 생략</p> <p>2. 발행인이 외국 기업 외의 외국법인등인 경우(집합투자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p> <p>가.~ 나. 생략</p> <p>다. 해당 증권에 대하여 신용평가업자의 평가등급을 받은 경우 신용평가서 사본</p> <p>라. ~ 차. 생략</p>
<p>유가증권상장규정 (한국거래소)</p>	<p>제3장 외국채무증권 제95조(신규상장 심사요건)</p> <p>외국채무증권을 신규상장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p> <p>4. 해당 외국채무증권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업자로부터 투자적격등급(BBB이상)을 받은 채무증권일 것</p>

Ⅲ. 유가증권 평가 외 신용평가 관련 규정

항목	법률명	법률 조항	시행령 조항 [시행규칙 또는 타 법령 및 규정]
기업도시개발 사업시행자 선 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민간기업 등을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기업 또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민간기업과 협의하여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민간기업은 재무건전성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⑤ (생략)	제14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1개의 민간기업이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전담기업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전담기업에 출자한 민간기업이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최근연도 회사채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가 투자적정 등급(BBB) 이상인 기업 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마. (생략) 2. (생략) ②~⑤ (생략)

항목	법률명	법률 조항	시행령 조항 [시행규칙 또는 타 법령 및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 허가요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p>제171조의6(외국인투자의 촉진을 위한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p> <p>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면 「관광진흥법」 제21조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외국인전용의 카지노업으로 한정한다)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허가에 조건을 붙이거나 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금액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카지노업 허가를 할 수 있다.</p> <p>1.~2. (생략)</p> <p>3. 투자자의 신용상태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p> <p>② ~⑥ (생략)</p>	<p>제24조(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조건 등)</p> <p>법 제171조의6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일 것</p> <p>2. 법 제171조의6제2항에 따른 투자계획서에 호텔업을 포함하여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을 세 종류 이상 경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p>

항목	법률명	법률 조항	시행령 조항 [시행규칙 또는 타 법령 및 규정]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선정	경제자유구역 의지정및운영 에관한특별법	제8조의3(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제4조제6항에 따라 분할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1.~4. (생략) 5. 공공부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6. (생략)	제6조의5(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생략) ② 법 제8조의3제1항제5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신용평가회사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가 투자적정 등급 이상 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가목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경제자유구역 내 카지노 허가 요건	경제자유구역 의지정및운영 에관한특별법	제23조의3(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외국인전용 카지노업만 해당한다)의 허가를 할 수 있다. 1.~ 2. (생략) 3. 그 밖에 투자자의 신용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을 충족할	제20조의4(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법 제23조의3제1항제3호에서 "투자자의 신용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 6 조의 5 제 2 항제 1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 일 것

항목	법률명	법률 조항	시행령 조항 [시행규칙 또는 타 법령 및 규정]
		것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p>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p> <p>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3. (생략) ②~⑤ (생략)</p>	<p>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p> <p>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p> <p>2. 원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신용평가회사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p> <p>3.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p> <p>② (생략)</p> <p>[건설하도급 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하도급법시행령 제3조의3(건설하도급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이란 2개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회사채평가에서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p>
조달청 적격심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p>제13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 <p>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된 적격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p> <p>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p>

항목	법률명	법률 조항	시행령 조항 [시행규칙 또는 타 법령 및 규정]
			<p>로 고려하여 심사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⑤ (생략)</p> <p>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심사는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하도급관리계획·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공사 또는 물품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p> <p>[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및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심사업체의 재무상태(경영상태) 평가부분에 신용평가등급 활용</p>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편입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7(고수익 고위험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등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	제92조의6(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등"이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신용평가회사 (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회사"라 한다)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가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한 채권 및 어음으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장이 정하는 등급

항목	법률명	법률 조항	시행령 조항 [시행규칙 또는 타 법령 및 규정]
		<p>(이하 "고수익 고위험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이 1억원 이하인 해당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고, 이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p> <p>②~⑤ (생략)</p>	<p>의 채권 및 어음(이하 이 조에서 "고수익고위험채권등"이라 한다)을 말한다.</p> <p>②~⑬ (생략)</p>
부동산투자회사 사채발행 요건	부동산투자회사법	<p>제29조(차입 및 사채 발행)</p> <p>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은 후에 자산을 투자·운용하기 위하여 또는 기존 차입금 및 발행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p>제33조(외부 차입)</p> <p>① ~② (생략)</p> <p>③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담보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투자등급의 신용평가를 획득한 사채를 발행하여야 한다.</p>
구조조정 대상 기업 요건	산업발전법	<p>제21조(구조조정 대상기업의 범위)</p> <p>구조조정 대상기업이란 금융업 및 보험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및 보험업을 말한다)을 제외한 업종의 영업을 하</p>	<p>제12조(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요건 등)</p> <p>법 제21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p> <p>1.~4. (생략)</p> <p>5. 6개월 이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신용평가회사들 이상으로부터 회사채 투자부적격 등급을 받은 기업</p>

항목	법률명	법률 조항	시행령 조항 [시행규칙 또는 타 법령 및 규정]
		<p>고 있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p> <p>1. ~4. (생략)</p> <p>5. 영업양도, 합병, 자산 매각 등을 통하여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또는 경영 정상화의 추진(이하 "기업 구조조정"이라 한다)이 필요한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p>	6.~7. (생략)
<p>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합병비율 산정</p>	<p>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p>		<p>제176조의5(합병의 요건·방법 등)</p> <p>④ 주권상장법인(기업인수목적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가목 본문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하되,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제8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p> <p>1.~2. (생략)</p> <p>②~⑥ (생략)</p> <p>⑦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주권비상장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합병의 당사자가 되는 법인이 모두 제1항제1호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또는 제4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⑧ 외부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p>1. 제6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인가받은 자</p> <p>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신용평가회사</p> <p>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p>

항목	법률명	법률 조항	시행령 조항 [시행규칙 또는 타 법령 및 규정]
			⑨~⑫ (생략)
직접공모방식의 유가증권 신고 서	자본시장과금 융투자업에관 한법률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①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모 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각각의 총액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인 경우에 한한다)은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 를 금 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 하면 이를 할 수 없다. ②~⑦ (생략)	제125조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법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집합투자증권 및 유동화증권은 제외한다)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생략)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다. (생략) 바. 주권비상장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인수인의인수 없이 지분증권(지 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모집 또는 매출(이하 "직접공모"라 한 다)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 춘 분석기관(이하 이 조에서 "증권분석기관"이라 한다)의 평가의견 . 다만, 금융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사. ~ 아. (생략) <i>[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금융위원회)]</i> 제2-5조(증권분석기관 등) ① 영 제125조제1항제2호바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분 석기관"이란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적정성 등 증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관

항목	법률명	법률 조항	시행령 조항 [시행규칙 또는 타 법령 및 규정]
			<p>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6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인가받은 자 2. 신용평가업자 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4. 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속세및증여세법	<p>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p> <p>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나. (생략)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생략) ②~④ (생략) 	<p>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p> <p>① 법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순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순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p> <p>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순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이하 "순순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p> <p>②~⑤ (생략)</p> <p>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순익액의 계산방법)</p> <p>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순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순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p> <p>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p>

항목	법률명	법률 조항	시행령 조항 [시행규칙 또는 타 법령 및 규정]
			<p>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 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 주당 순손익액×1)}×1/6</p> <p>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 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 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②~⑤ (생략)</p> <p>제56조의2(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①~④ (생략)</p> <p>⑤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평가대상 법인의 단순 회계상의 오류 또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의 정정, 제54조제1항의 산식 중 순손익가치 환원율의 산정(같은 항의 산식 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자기자본 또는 타인자본 조달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다), 평가대상 법인과 자산·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감안하여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주권상장법인등을 말한다)의 주식가액과의 비교평가 등에 관하여 심의하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평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거나 심의에 앞서 관계인의 증언을 청취할 수 있다. ⑥~⑪ (생략)</p>
국유주식 매각 가격 평가	국유재산법		<p>제46조(증권의 평가기관)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등은 증권이 처분가격을 산출할 때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그 평가액을 고려할 수 있다.</p> <p>1. 감정평가법인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p>
우리사주 평가	근로복지기본	제45조(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의 처	제27조(환매수 가격)

항목	법률명	법률 조항	시행령 조항 [시행규칙 또는 타 법령 및 규정]
가격 산정	법	분) ①~②(생략) ③ 비상장법인인 우리사주제도 실시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의 환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법」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 또는 퇴직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를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한 주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 2. 「상법」 제342조의 예에 따른 처분 3.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의 소각	① 법제45조제3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의 가격, 가격 결정 시점 및 적용 기간 등 취득에 필요한 사항은 회사와 조합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조합은 다음 각 호의 평가가격을 고려할 수 있다. 1.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평가가격 2.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의 평가가격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른 평가가격 4. 「 <u>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u> 」제9조에 의한 신용평가회사의 평가가격
중소기업 주식 교환 시 주식이 치평가	중소기업사업 전환촉진에관한특별법	제4조(신주발행에 따른 주식교환 등) ①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은 사업전환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여 다른 주식회사 또는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 주주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주식회사 또는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는 승인기업이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으면 해당 승인기업의 주주	제14조 (공인평가기관)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증권의 인수 및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 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 2. 「 <u>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u> 」제9조에 의한 신용평가회사 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으로서 소속 공인회계사의 수가 30명 이상인 회계법인 4.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항목	법률명	법률 조항	시행령 조항 [시행규칙 또는 타 법령 및 규정]
		<p>가 된다.</p> <p>② (생략)</p> <p>③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을 통하여 다른 주식회사 또는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승인 기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 그 주식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에는 「상법」 제422조제1항에 따라 검사인이 조사한 것으로 보거나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22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④ (생략)</p>	
벤처기업 주식 교환 시 주식평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p>제15조의4(신주발행에 의한 주식 교환 등)</p> <p>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여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의 주식이나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나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이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그 벤처기업의 주주가 된다.</p>	<p>제6조의3(공인평가기관)</p> <p>법 제15조의4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와투자중개업자(증권의 인수·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신용평가회사 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으로서 소속 공인회계사가 100명 이상인 회계법인 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5. 기술신용보증기금

항목	법률명	법률 조항	시행령 조항 [시행규칙 또는 타 법령 및 규정]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을 통하여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가 보유한 주식이나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이 보유한 주식을 벤처기업에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 이 그 주식의 가격을 평가한 때에는 「상법」 제422조제1항에 따라 검사인이 조사를 한 것으로 보거나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법」 제422조제2항 및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거래제한 대주주 판정 (금융지주)	금융지주회사법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① ~ ⑨ (생략) ⑩ 금융위원회는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회사에 한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약화되는 등 재무구조의 부실로 인하여 비은행지주회사등의 경영건전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는 그 비은행지주회사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의5(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① ~ ⑨ (생략) ⑩ 법 제34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주주(회사만 해당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2.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가장 많은 금융기관(해당 대주주가 대주주인 금융기관은 제외한다)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해당 대주주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로 분류한 경우 3. 「 <u>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u> 」제9조에 의한 신용평가회사 둘 이상이 해당 대주주를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한 경우

항목	법률명	법률 조항	시행령 조항 [시행규칙 또는 타 법령 및 규정]
		1. 대주주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의 금지 2.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규 취득 금지 3. 그 밖에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 성격의 거래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거래제한 주요 출자자 판정 (금융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 법	제45조의5(주요출자자에 대한 자료 제출요구 등) ① (생략) ② 금융위원회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회사에 한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재무구조의 부실화로 인하여 당해 은행지주회사등의 경영건전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은행지주회사등 또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지주회사등에 대하여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을 명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의5(주요출자자와의 거래제한 등) ① 법 제45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주요출자자(회사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되어 당해 은행지주회사등과 불법거래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2.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가 가장 많은 금융기관(해당 주요출자자가 대주주인 금융기관은 제외한다)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해당 주요출자자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하로 분류한 경우 3. 「 <u>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u> 」제9조에 의한 신용평가회사 2이상이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한 경우
거래제한 대주	보험업법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57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항목	법률명	법률 조항	시행령 조항 [시행규칙 또는 타 법령 및 규정]
주 판정 (보험업)		① ~ ⑤ (생략) ⑥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대주주(회사만 해당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재무구조가 부실하여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주주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 금지 2. 대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신규 취득 금지 3. 그 밖에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 성격의 거래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① ~ ⑤ (생략) ⑥ 법 제11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주주(회사만 해당하며, 회사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2. 대주주가 「 <u>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u> 」제9조에 의한 신용평가회사에 의하여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
거래제한 대주주 판정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4(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① (생략) ②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회사만 해당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재무구조의 부실로 그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다음 각	제12조의3(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등) 법 제22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3. 대주주가 「 <u>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u> 」제9조에 의한 신용평가회사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에 의하여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

항목	법률명	법률 조항	시행령 조항 [시행규칙 또는 타 법령 및 규정]
		<p>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신규 취득 금지 2. 그 밖에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 성격의 거래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p>거래제한 대주주 판정 (여신전문금융업)</p>	<p>여신전문금융업법</p>	<p>제50조의8(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등)</p> <p>① (생략)</p> <p>②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회사만 해당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넘는 등 재무구조의 부실로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뚜렷이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는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그 대주주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의 금지 2. 그 대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신규 취득 금지 3. 그 밖에 그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 성격의 거래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p>제19조의13(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p> <p>법 제50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2. (생략) 3. 대주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신용평가회사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에 의하여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
<p>거래제한 대주</p>	<p>은행법</p>	<p>제35조의5(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p>	<p>제20조의8(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p>

항목	법률명	법률 조항	시행령 조항 [시행규칙 또는 타 법령 및 규정]
주 판정 (은행업)		요구 등 ① (생략) ② 금융위원회는 은행 대주주(회사만 해당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재무구조의 부실화로 인하여 은행의 경영건전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는 그 은행 또는 그 대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은행에 대하여 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을 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법 제35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해당 은행과 불법거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신용평가회사 둘 이상이 투자 부적격 등급으로 평가한 경우 ② (생략)